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19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박홍배 · 정혜경 · 박지원
박정현 · 민병덕 · 이재정
서영교 · 박희승 · 황명선
문대림 · 박 정 · 김우영
윤준병 · 전용기 · 윤후덕
염태영 · 한준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수자원 이용량 366억 m^3 중 재이용량은 불과 4%(14.2억 m^3)에 불과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물그릇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물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전국에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설치된 고속국도 휴게소 20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방문객수는 120만명으로 알려져 있음. 산간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인 휴게소 입지 특성상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 이러한 휴게소들은 중수도 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수 수요처가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중수도 활용처 증대를 통해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시설로서 1일 계획 물 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	----------------